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 현황 및 전망

이 동 욱*

이 연구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과장 (02-759-5418, dlee@bok.or.kr)

본 연구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예홍 연구실장과 네분의 심의위원, 그리고 자료정리를 도와준 김유진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 차 례 >

Ⅰ. 머리말 ····· 1

Ⅱ. WTO 가입 이전 중국 중앙은행 제도의 특징 ····· 3

III. WTO 가입과 중국 중앙은행 제도의 개혁 필요성 ····· 8

IV. WTO 가입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 ····· 11

V. 예상되는 중국인민은행의 변화방향 전망 ····· 26

VI. 맺음말 ····· 35

<부록: 중국인민은행법 (1995년 및 2003년 개정판)> ····· 43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현황 및 전망

본 연구에서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예상해 보았다.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이 제정되어 중국에도 서구 자본주의국가들과 유사한 중앙은행이 탄생되었다. 공산당과 국무원의 감독하에 놓여있어 독립성이 많이 부족하였다.

중국은 2001년 말 WTO 가입으로 금융권 전체의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중국인민은행의 기능과 조직도 변화하였다. 은행감독기능을 전문감독기관에 이양하는 한편 금융안정 부문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상하이에 중앙은행 제2본부를 설립하여 금융시장동향을 보다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의사결정방식도 중요사안만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에 사전회의에 부치고 나머지 업무는 사후보고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WTO 가입 이후 중국인민은행에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선진 자본주의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져있는데다가 효율적인 중앙은행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중국인민은행의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나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금융개혁을 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중앙은행 개혁도 결국 체제문제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주제어: 중국,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 금융개혁, 국제기구, WTO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G21, E58, F13

I. 머리말

중국은 최근 세계의 실물 및 금융부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실물분야에서는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된 공산품을 수출함으로써 제조업분야에서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다.[1] 또한 금융분야에서는 8,0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을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미국 국채의 장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The Economist (2005)).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외환보유액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정부기관의 하나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법적으로는 국무원 산하의 외환관리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중국인민은행이 외환관리국을 감독·관리하는 동시에 직접 외화운용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이처럼 중국의 환율, 금리 등과 관련한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 그동안 중국인민은행 자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이래 한국에서 중국인민은행에 대한 공식 연구논문이나 보고서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국어라는 일차적 장애요인이 있었지만 그 보다는 정보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데다 중국인민은행에 관한 많은 부분이 비공개로 되어 있었던 것이 더 큰 이유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연차보고서에는 중국인민은행의 조직도, 인원수, 재무제표 등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기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내용마저 게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1)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중국을 디플레이션 수출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동 주장은 일본의 하루히코 쿠로다(黑田東彦) 당시 일본 재무부 차관(현 ADB총재)이 2002년 영국의 Financial Times 紙에 “Time for a Switch to Global Reflation”이란 칼럼을 투고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같은 해 모건스탠리의 스티븐 로우치 (Stephen Roach)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박승 총재도 2005년 9월 8일 ‘최근 물가상승률이 낮은 것은 중국산 저가 수입품으로 인한 위장된 물가안정’ 때문이라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및 홍콩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Kuroda(2002); Roach(2002); Bank of China(2002); People's Daily(2002); People's Daily(2003)를 참조.

중국인민은행이 아직도 기본적인 정보의 상당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관련출판물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중국인민은행에 관한 연구에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본 연구자료를 발간하게 된 것은 세계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인민은행에 관한 정보를 축적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중국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가입이 결정되어 같은 해 12월 중국입법부의 비준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금융구조조정, 국유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관계 등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들은 필요한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언급하고 WTO 가입을 전후하여 최근 10년 사이에 일어난 중국인민은행의 개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 중앙은행의 지위, 조직, 의사결정방식 등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고자 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룬 중국이 체제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은행의 조직과 기능을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조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WTO 가입 이전 중국인민은행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WTO 가입이 중국인민은행과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검토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WTO 가입 이후의 중국인민은행의 개편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V 장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였다. 제VI장은 본 연구의 맺음말이다.

II. WTO 가입 이전 중국 중앙은행 제도의 특징

1. 이원적 은행체제로의 전환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1948년 12월 3개의 지방상업은행[2]을 기반으로 여타 은행들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초기 이후 1970년대 후반까지 사회주의 사상의 실천도구로서 방대한 규모의 국가은행이 필요하다는 레닌의 주창(Garvy(1977))에 따라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 기능은 물론 일반 상업은행, 보험 및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단일은행체제(mono -banking system)를 유지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운동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금융의 역할이 커지고 통화신용정책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중앙인민은행에서 상업은행 기능을 분리시켰다. 분리된 상업은행 기능을 중심으로 중국공상은행 등의 국유상업은행들이 설립됨에 따라 약 100만 명에 달하던 중앙은행의 직원 수가 2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중국인민은행은 인원, 조직 및 기능이 크게 변화하였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분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정비는 부진하여 1995년이 되어서야 중국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의 중국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은행제도의 두 축을 구성하는 이원적 은행체제(two-tier banking system)가 도입되었다.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3]으로 "통화가치의 안정과 경제성장 촉진(동법 제3조)"이라는 중앙은행의 명확한 정책목표가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정책목표 가운데서 통화가치의 안정보다는 경제성장 촉진, 즉 경제

2) 華北은행, 北海은행 및 西北農民은행.

3) 1995년 제정된 중국인민은행법을 통상적으로 구(舊) 중국인민은행법이라고 하고 2003년 개정된 이후의 중국인민은행법을 신(新) 중국인민은행법이라고 한다. 신·구 중국인민은행법의 중국어 원문은 모두 중국인민은행 웹사이트(www.pbc.gov.cn)에 게재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본 논문 IV 장을 참조.

성장목표 유지를 더 중요시하였다(산업은행(2001)).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 목표가 성장에 초점을 둔데다가 국가조직체계상 중국인민은행이 중앙행정조직의 한 부서로 되어있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중앙 행정부의 영향력이 큰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행정체계상 중국공산당[4]과 국무원[5] 산하의 장관급 부서로 주요 도시와 한국의 군과 유사한 현(縣) 단위에 이르기까지 중국 전역에 지점망을 두고 있다. WTO 가입 직전 중국인민은행의 주요업무는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기관의 인허가 관리, 금융감독, 외환보유액 관리 업무(중국인민은행법 제4조)" 등으로 업무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었다. 이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재경부의 주요 금융정책 수립,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외환보유액 운용,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합친 것과 유사하다.

2. 공산당의 통제

중국의 WTO 가입 이전 중국인민은행은 공산당의 직접적인 명령형 지시와 간섭을 받았는데 아시아 금융위기(1997~1998년)를 계기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었다. 중국인민은행은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의 제정으로 "법에 의거하여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6]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중국인민은행법상의 근거도 없이 중국공산당 금융공작위원회(中央金融工作委員會, 이하 금융공작위원회)가 설립되어 중앙은행이 동 위원회의 지

4) 1921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租界, 조차(租借) 지역)에서 창당되었으며 현재 중국의 유일한 정당이다. 창당 초기 53명에서 출발하여 현재 약 6,400만 명의 당원이 있다. 呂平(1987)외 각종 언론 보도 참조.

5) 한국의 국무조정실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장관급부서는 물론 위원회, 세관, 사회과학원, 신화통신사 등 여러 기관들을 총괄한다는 데서 그 기능과 조직이 훨씬 방대하다.

6) 1995년에 제정된 중국인민은행법 원문(제4조 1항)에는 "依法制定和執行貨幣政策"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년 개정 이후에도 같은 문구가 중국인민은행법 제4조 2항에 포함되었다.

시를 받게 되었다. 금융공작위원회를 만든 주목적은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에 따른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고 당시 만연한 금융부조리를 척결하는 한편 해이해진 중앙은행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음으로써 민심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과 관련하여 당의 지도력을 확고히 하며 당의 노선방침과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7] 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998년 5월 19일 발표된 "중국공산당 당 중앙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당의 지도력 완비 및 업무추진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통지"[8]라는 한 장의 문건에 의해 설립되었다. 인민은행법상의 근거도 없이 금융공작위원회가 중국인민은행 건물에 입주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간섭이 시작되었다.[9] 금융공작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는 물론 금융개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핵심기관[10]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표1>과 같다.

<표1>　　금융공작위원회의 주요업무

① 금리, 환율 결정 등 중국인민은행과 관련된 주요업무
②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의 정치사상교육, 인사, 감사,
③ 30대 대형금융기관(중앙은행을 비롯하여 民生銀行 등과 같은 민간금융기관 포함)에 대한 인사권 행사
④ 중앙은행과 4대 국유상업은행을 포함한 18개 금융기관 감사
⑤ 예금수탁이 가능한 금융기관들의 부국장 이상 고급간부 성향분석
⑥ 국유상업은행의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 여부 결정

자료: Far Eastern Economic Review; 商務週刊; 21 世紀 經濟報道 등 종합

금융공작위원회가 금리 및 환율 결정권, 금융업계 고위층에 대한 인사권 등을 행사함에 따라 이 시기의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공작위원회의 명령에

7) 금융공작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문건 본문에서 인용.

8) 中共中央關于完善金融系統黨的領導体制, 加强和改革金融系統黨的工作有關問題的通知

9) 국무원 산하 행정기관 중 재무부(財政部, 한국의 재경부와 유사)에는 이러한 당기관의 직접적 업무간섭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Gilley and Murphy(2001); Chung and Tongzon(2004); 商務週刊(2003); [illegible](2003).

의해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하여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게 되었다. 일부 서구 언론들[11]은 이 당시의 중국인민은행을 알맹이 없는 텅 빈 조직(hollow institution)이라고 호칭할 정도였다. 중앙은행법이 존재함에도 금융은 물론 각종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법체계상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당헌(中國共産党章程)을 헌법보다 상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강효백(2005); 한대원(2002)). 중국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과 인민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계속"하도록 명시하여 공산당의 위치를 확고히 정해두고 있다.

금융공작위원회는 15인의 핵심요원을 포함하여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금융경험이나 전문성은 없으나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 즉 당성이 뛰어난 인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책임자는 당시 원자바오(溫家寶) 부총리였으며 일상 업무는 옌하이왕(閻海汪) 금융공작위원회 부서기 겸 중국인민은행 부총재[12]가 담당하였다.

금융공작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지방 성(省)정부와 공산당 지방조직이 중앙은행의 지점운영에 간섭을 하던 과거의 횡적인 감독체제에서 벗어나 금융공작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과 지휘명령을 받는 종적인 감독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금융계 전반에 걸쳐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등의 장점이 있기도 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중앙은행 총재가 금융공작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리결정 등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회의에 한동안 중앙은행 총재와 다른 부총재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특히 의사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으로서의 고유기능과 독립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당 기관인 금융공작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은행에 명령·지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금리 등을

---

11)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001년 5월 24일, "Why China Needs a Real Central Bank" 기사 참조) 등.

12) 중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총재와 일반 상업은행의 행장을 모두 "행장(行長)"이라고 호칭한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중앙은행의 경우 "총재"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조절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대신 은행대출의 전면중단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조절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명령형 경제체제로 인해 보이는 손에 묶인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시키는 경제 메커니즘[13]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Cheng(2001); Nathan, Smith, and Hong(2001)).

3. 미 연준의 조직개편 사례 적극 참조

중국인민은행은 오랫동안 지방의 성 정부와 공산당 지방조직의 간섭을 받아 왔다. 이 같은 횡적인 간섭으로 인하여 통화정책을 비롯한 각종 금융정책이 지방까지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중국인민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미 연준)의 사례를 참고하고자 미국과 수차례 세미나를 했다. 중국이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국토 크기가 비슷하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가장 발달한 시스템 중의 하나라는 것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공산당이 금융분야에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공작위원회를 설립한 1998년에는 미 연준의 12개 지역은행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각 성 단위로 있던 32개의 대도시 지점들을 폐지하고 그 대신 9개 주요 도시(天津, 瀋陽, 上海, 南京, 濟南, 武漢, 廣州, 成都, 西安)에 지역은행[14]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개 지역은행이 여러 개 주의 은행을 관할하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1개 지역은행이 여러 개 성에 걸쳐 중국인민은행 지점들과 일반 상업은행 지점들을 관할하도록 하였다. 동 조치에 의해 공산당의 지방조직과 지방의 성 정부가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 집행과 은행감독업무에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

13) "보이는 손에 묶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메커니즘(economic mechanism operated by the invisible hands bound by the visible hand)"이라는 표현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시아오농 청(Xiaonong Cheng) 교수가 중국경제를 지칭하며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다.

14) 처음에는 중국어로 "大區分行" 이라고 하였으며 점차 약칭인 "分行"으로 불리게 됨.

III. WTO 가입과 중국 중앙은행 제도의 개혁 필요성

1.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서비스시장 개방을 약속하였다. 특히 은행시장에 존재해왔던 영업대상 및 영업가능지역에 대한 각종 제한을 2006년 12월 말까지 해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표2> 참조).

<표2> WTO 가입에 따른 중국 은행시장의 개방 일정

일 정	외국계 은행이 위안화 취급 가능(예정)한 지역	외국계 은행이 제공 가능한 서비스	비 고
WTO 가입 (2001.12월)	天津, 大連,上海, 深圳	영업대상: 외국계 기업체 및 외국인	경제적 수요심사나 점포수에 대한 제한 없이 건전성 규제에 의거하여 외국계 금융기관에 대해 인·허가
2002년	廣州, 青島, 南京, 武漢		
2003년	濟南, 福州, 成都, 重慶	영업대상확대: 중국계 기업추가	
2004년	昆明, 珠海, 北京, 廈門		
2005년	汕頭, 寧波, 沈陽, 西安		
2006년	모든 지역제한 철폐	영업대상확대: 중국계 개인 (모든 제한 폐지)	

자료:中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法律文件』, 法律出版社, 2002. 등

그동안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던 차에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정책당국으로 하여금 금융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긴장감을 갖도록 하였다. 시장개방 약속으로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지고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중앙은행의 지휘 아래 국가은행을 주체로 하여 다양한 종류의

금융기관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여 중국인민은행이 공산당과 국무원의 위임을 받아 금융구조조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한편 WTO는 국제통화기금(이하 IMF) 및 세계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외환보유액, 국제수지, 기타 외환관련 사항 등에 관한 문제점은 IMF에서 최종판단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IMF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WTO와 IMF의 연계 움직임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Ahn(2003)).

그러나 IMF에는 WTO와 같은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없고 당사자간 자체 협의에 의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WTO에는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물론 그 정관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항을 두어 환율제도가 무역실적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실상의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해 국제적인 표준을 따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문제, 특히 환율제도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미국과 유럽 등은 WTO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중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시장경제국(market economic country)이란 경제체제가 국가의 행정명령보다는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고 인정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WTO 규정 제15조 보조금과 덤핑결정상의 가격비교 조항에 따르면 시장경제국 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여부를 판정할 때 제 3국의 가격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덤핑관세율도 높게 책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국은 WTO 가입의정서에 서명할 당시 선진국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최장 15년간 감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모든 국가들이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할 경우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15] 한편, 시장경제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정부행위의 표준

15) 참고로 2005년 말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42개 국가만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화(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시장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금지) ② 경제기조의 자유화 ③ 시장 지향적 요소의 도입 ④ 공정한 거래 환경 ⑤ 금융시장의 합리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유럽연합(이하 EU)과 미국 등은 중국을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큰 사회주의 국가로 보고 있다. 즉, EU는 ① 정부개입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와 기업민영화 ② 지적재산권 ③ 파산법 ④ 금융개혁 등의 측면에서 중국이 여타 시장경제국가의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미국은 ① 탄력적인 환율정책으로의 전환 ②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 ③ 노동권 보장 ④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eople's Daily (2004)).

중국은 결국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준수하고 선진국들로부터 시장경제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EU와 미국이 주장하는 금융개혁과 탄력적인 환율정책을 채택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보다 과감하게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시장친화적인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게 되었다.

IV. WTO 가입 이후 중국인민은행의 개편

1. 금융공작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앙은행의 역할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2003년 말 중국인민은행법을 대폭 개정하고 금융공작위원회를 폐지하였다. 금융공작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본격적으로 금리, 환율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등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1> 공산당·국무원· 중국인민은행의 조직 및 관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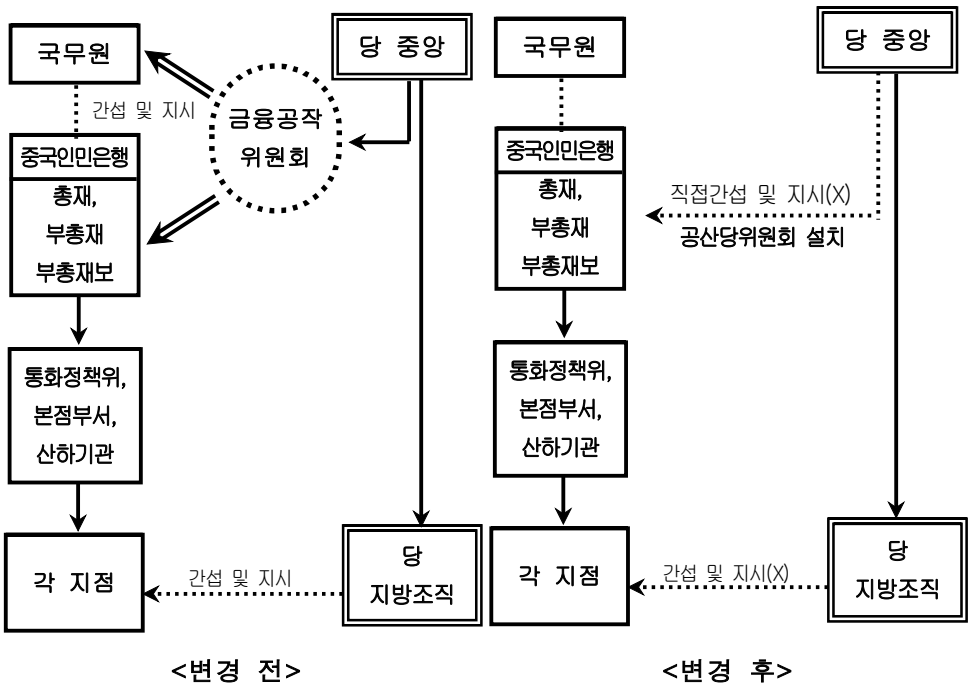

2003년 말 금융공작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의사결정방식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과거에는 금융공작위원회가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환율이나 금리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직접 명령을 내리는 의사결정방식이었으나 금융공작

위원회가 폐지된 이후에는 “통화량, 환율, 금리 등과 기타 중요사안(중국인민은행법 제5조)”에 대해서는 중국인민은행이 공산당과 국무원에 사전에 부의하여 재가를 받고, 중국인민은행법과 그 하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미한 업무사항은 사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 내부에는 중국인민은행 공산당위원회(이하 당위원회(黨委))라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당위원회의 총책임자급인 서기 직책을 총재가 겸임하게 되어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약화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에는 총재 이외에 부총재 및 부총재보급 인사들이 당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원칙상 당위원회의 역할은 당의 정치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으나 실상은 당성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가려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권한을 갖고 있어 주요 공직의 인사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중국 대부분의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기업체에까지 당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앙은행의 총재가 당위원회의 최고직을 겸직하는 것은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으로 보인다.

2. 금융개혁 및 금융안정 기능 수행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금융을 재정의 보조수단으로 간주해왔다. 금융시장을 통해 자본을 배분하는 것과 국가가 계획을 통해 자금을 배분하는 것에 의해 얻는 효력의 차이는 크다. 특히 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다양한 자금원을 발굴할 수 있게 되어 금융거래비용을 낮추게 되고 자금의 질적인 제고에도 유리하다. 중국도 오랫동안 재정을 통해 국유기업의 소요자금을 지원해왔는데 1984년부터 중국 국무원은 금융을 거시경제조절의 주요수단으로 결정하고 1985년부터 국유기업에 대한 소요자금을 재정에서 은행대출로 전환해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유상업은행이 실적이 부진한 국유기업에도 대출형태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었다. 부실채권이 누적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산당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은행경영에 관한 간섭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간은행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고 공산당과의 연관성 또는 당에 대한 충성심에 근거한 인사이동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유상업은행이 당과 정부의 명령에 따라 경영이 부실한 국유기업에도 여신을 제공해 생겨난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왔다. 누적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책임소재 문제가 대두하였는데 중국에서는 국유은행이나 국유기업 어디에도 책임을 묻기 곤란해졌다. 이에 중국정부에서는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매년 지원해 왔고, 은행권에는 소위 “공적자금 의존 증후군(注資依賴症候群)”이 생겨나게 되었다(王晨波(2005)).

이런 점에서 중국에서 은행권의 부실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재정의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희락(2001)).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은 재정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금융에 거시경제조절의 기능을 부여하고, 기업활동의 감시기능, 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조절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마련하였다(박정동(2003)). 증권시장을 개설(1991년)·육성하고,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업적 수익성에 근거한 상업은행들의 대출활동을 장려하였으며 국유기업들에 대한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을 추진하였다. 이후에도 상업은행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유상업은행의 정부 프로젝트 자금대출 의무조항[16] 폐지(2003년), 일부 국유상업은행의 법인화(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및 중국공상은행),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중국계 은행 지분참여 허용 및 해외상장(중국건설은행, 2005년; 중국은행,2006년) 등 금융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Lee(2005)).

16) 개정(2003년)이전의 중국상업은행법 제41조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특정 대출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유상업은행은 대출을 제공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국무원이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그 구체적인 보상조치 방법은 국무원의 결정에 따른다(經國務院批准的特定貸款項目, 國有商業銀行應當發放貸款, 因貸款造成的損失, 由國務院 採取相應補救措施, 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금융개혁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금융개혁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누적된 부실채권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4대 국유 상업은행(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 및 중국농업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대 국유 자산관리공사[17]를 1999년에 설립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부실채권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곤란한 체제상의 한계로 인하여 국유 상업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시장가격이 아닌 장부가격으로 국유 자산관리공사로 이전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또한 국유 자산관리공사의 적절하지 못한 자금사용과 부실자산 처분과 더불어 정치적인 간섭도 적지 않았다.

시한폭탄으로까지 묘사되는 은행권의 부실채권문제(Lee(2005)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중국정부는 중국인민은행이 보유·관리해 오던 외환보유액 중 약 450억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2003.12.16일 중앙 후이진투자 유한책임회사(中央滙金投資有限責任公司, 이하 후이진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동안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구조조정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후이진공사를 통해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구조조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 독립법인이라는 점에서 후이진공사는 일견 싱가포르투자청이나 한국투자공사와도 유사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고수익성 국외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싱가포르 투자청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는 달리 국내 금융기관에 자금지원을 통해 재무상태 및 경영개선 등과 같은 금융구조조정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이다.

후이진공사는 행정체계상으로는 국무원의 단독출자법인의 형태이나 실상은 국무원이 중국인민은행에 감독 및 운영을 위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겸 외환관리국 국장출신인 궈수칭(郭樹清)이 후이진공사의 이사회 초대의장을 맡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 역시 중국인민은행 출신의 시에핑(謝平)이 맡았던 점을 들 수 있다.

17) 華融(Huarong), 長城(Great Wall), 東方(Orient) 및 信達(Xinda) 자산관리공사.

후이진공사는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안정 유지와 금융위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보조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胡海岩(2005)).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최종대부자 기능을 발휘하거나 일반 금융기관들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안정국(金融穩定局)에서 세부 집행방법을 결정하고 후이진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후이진공사의 자금지원 등에 관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물환계약(선도계약)을 맺어 외환보유액의 외환 대신 위안화로 제공하고 지분을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지분참여를 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등을 한 후에 경영진의 교체요구를 하거나 경영진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거나 경영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안정국과 후이진공사의 최고책임자가 현재 중국 행정부 내 직급체계상 각각 국장급과 차관급인 기관이나, 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들의 책임자들은 같은 직급이거나 그보다 상위직급이다(Financial Times (2005)). 또한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자가 대부분 공산당원이어서 당 서열과 행정조직상의 상하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무상 이들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요구나 경영감시가 쉽지 않은 체제상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아울러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애매한 성격을 가진 후이진공사에 싱가포르 투자공사와 같은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기 곤란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금출처, 운용방식, 운용실적, 운영책임자의 권한과 의무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공시(公示)와 투명성의 문제도 있다.

<표3 > **중국 후이진투자공사의 주요 투자현황**

(2005년 말 현재)

종류	투자대상	투자금 성격	투자금액	비고
국책은행	수출입은행	외환보유액 출자	50억달러	
국유상업은행	중국은행	외환보유액 출자	225억달러	약 50-60% 지분확보 예정
	중국건설은행	외환보유액 출자 및 대출	225억달러 (그중 25억 달러는 대출)	지분86.1% 확보후 상장
	중국공상은행	외환보유액 출자	150억달러	지분 50%확보
일반상업은행	交通은행	대출	30억위안	지분 6.68%확보
증권회사	建銀투자공사(JIC)	외환보유액 출자	25억달러	건설은행의 자회사
	中[illegible]金融有限公司	외환보유액 출자	..	建銀투자공사를 통해 43.35% 지분확보
	銀河증권	대출	약10억위안	
	申銀萬國 증권	대출	40억위안	대출금 15억위안은 유동성지원 목적, 지분 37.3%취득
	國泰君安 증권	대출	25억위안	대출금 15억위안은 유동성 지원 목적, 지분 21% 취득
	南方증권	대출	80억위안	중앙은행으로부터 후이진공사가 대출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建銀투자공사가 南方증권을 인수할 예정
	光大은행、華夏증권、국가개발은행, 中信증권 등 많은 금융기관들이 출자 지원을 받기위해 기다리는 중			

자료: 중국, 홍콩, 대만의 주요 언론보도 종합

중국은 WTO 가입 직후 금융분야 중에서도 중국인민은행과 관련하여 많은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시장개방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였다.

<표4> **중국인민은행법상 기능변화의주요내용**

	1995년 중국인민은행법	2003년 개정 중국인민은행법
주요업무	- 통화정책의 수립, 집행 - 위안화의 발행 및 유통관리 - 거시조정시스템의 건립과 정비 - 국가보유 외환 및 금의 관리 및 운용 - 국고관리 -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인 운용 및 유지 - 위폐 단속 - 금융기관의 인가, 관리, 감독 - 금융감독 및 금융업무에 관한 명령 및 규칙제정 등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 금융위험부담 방지 및 해소 - 금융안정수호 - 금융시장의 균형발전 촉진
통화정책 목표	- 화폐가치의 안정 - 경제성장 촉진	(좌동)
통화정책 수단	-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예치 - 중앙은행으로서 기준금리 결정 - 재할인정책 -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 공개시장운영 -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통화정책수단	(좌동)
신용공여 제한	-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당좌대월금지 - 국채 및 기타 지방채권의 직접응모금지 및 인수금지 - 지방정부 및 각급정부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지 (단, 국무원 허용시 대출가능) - 기타 단체 혹은 개인에 대한 대출 또는 지급 보증금지	- 중앙정부 재정에 대해 당좌대월 금지. 상업은행에 대한 1년 초과 대출금지 (좌동) (좌동) (좌동)
금융기관 감독	- 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혹은 영업종료 및 업무범위 인가 등	-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에 관련된 제반 감독업무 - 금융정보 분석업무 - 돈세탁 방지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에 대해 감독

자료: 중국인민은행법

2003년 개정된 중국인민은행법상 중앙은행의 주요업무에 금융위험 방지와 해소, 금융안정 수호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감독기능을 명문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금융안정, 금융정보분석 및 자금세탁방지 기능을 법조문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2003년부터 금융안정국을 새로 설치하여 금융안정업무 기능을 가동하였으며 2005년 11월에는 처음으로 『금융안정보고서』를 발간하였

다. 금융위험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보강하고 동시에 내부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7월 이후 모든 은행에 선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새로운 환 위험 관리수단을 도입하였는데 2005년 11월에 시장조성자 제도[18]를 도입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3. 과감한 인사개혁 실시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국인민은행의 개혁을 위해서는 외부인사영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2002년 12월 증권감독위원회 위원장(차관보급) 출신인 쩌우샤오취앤(周小川)을 중국인민은행 총재(장관급)에 발탁·임명하였다. 또한 경제학 및 법학 박사 출신 각 1명 등 학자형 부총재를 외부로부터 영입하였다. 특히 감사원에서 오래 근무한 샹준보(項俊波) 박사를 부총재에 임명한 것은 금융개혁이 가속화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예방차원으로 분석된다.

또한 6명이던 부총재(차관급) 중 1명의 은퇴를 계기로 더 이상 부총재를 선발하지 않음으로써 고위직급인 부총재를 1명 줄였다. 대신 실무담당 책임자인 부총재보를 2명 늘려 3명의 부총재보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중국인민은행은 과거 1총재, 6부총재, 1부총재보 체제에서 1총재, 5부총재, 3부총재보 체제로 전환하였다.

WTO 가입 이후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감독기능의 분리를 계기로 17만명의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약 3만 5천 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부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물론 일부 인력이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행감독위원회)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한 자연감소요인도 있었으나 그보다는 대부분이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이었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업무적성검사를 통해 집중적인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기존 중국인민은행 공무원들도 절대적인 직업 안정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욱(2003)).

18)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일반 투자자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매수호가와 매도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유동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4. 상하이 제 2본부 설립

2005년 8월 10일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의 뉴욕 연준은행을 참조하여 상하이에 제 2본부를 설립하였다. 상하이 제 2본부는 베이징 본부에서 옮겨온 공개시장운영부, 금융시장관리부, 금융안정부, 조사통계연구부, 국제부, 금융서비스부, 외환관리부 등 7개 핵심부서와 총무부(綜合管理處), 인사부(人力資源管理處) 및 감사실(紀檢監察室)의 3개 부서에 약 700명이 근무하는 조직으로 출범하였다.[19)]

상하이는 외환시장, 증권시장, 콜시장, 채권시장, 금시장, 선물시장 등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중국의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이 뉴욕 연준은행을 본떠 상하이 본부를 설립한 것은 그에 걸맞은 중앙은행의 기구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중국인민은행의 상하이 본부 설립은 월스트리트가 있는 미국 뉴욕처럼 상하이를 단순히 중국의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 물류 정비, 금융시장 육성, 감독기능 강화, 법규 정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시키려는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참고로 중국이 주로 참고한 미 연준은 연방 공개시장 운영데스크(Federal Open Market Desk)가 워싱턴 D.C.가 아닌 뉴욕에 설치되어있다. 또한 12개의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뉴욕 연준은행의 총재만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약칭 FOMC, 이하 공개시장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할 만큼 미연준 체제 안에서도 뉴욕 연준은행의 발언권이 크다.

---

19) 참고로 상하이본부가 출범하고 난 뒤인 2005년 말 현재 중국인민은행 베이징 본부에는 약 20개의 주요부서가 있으며 1,000여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출처:“中國人民銀行 許文新, “中國金融改革の当面の課題”; 각종 언론보도 참고.

<그림2> 중국인민은행 내부조직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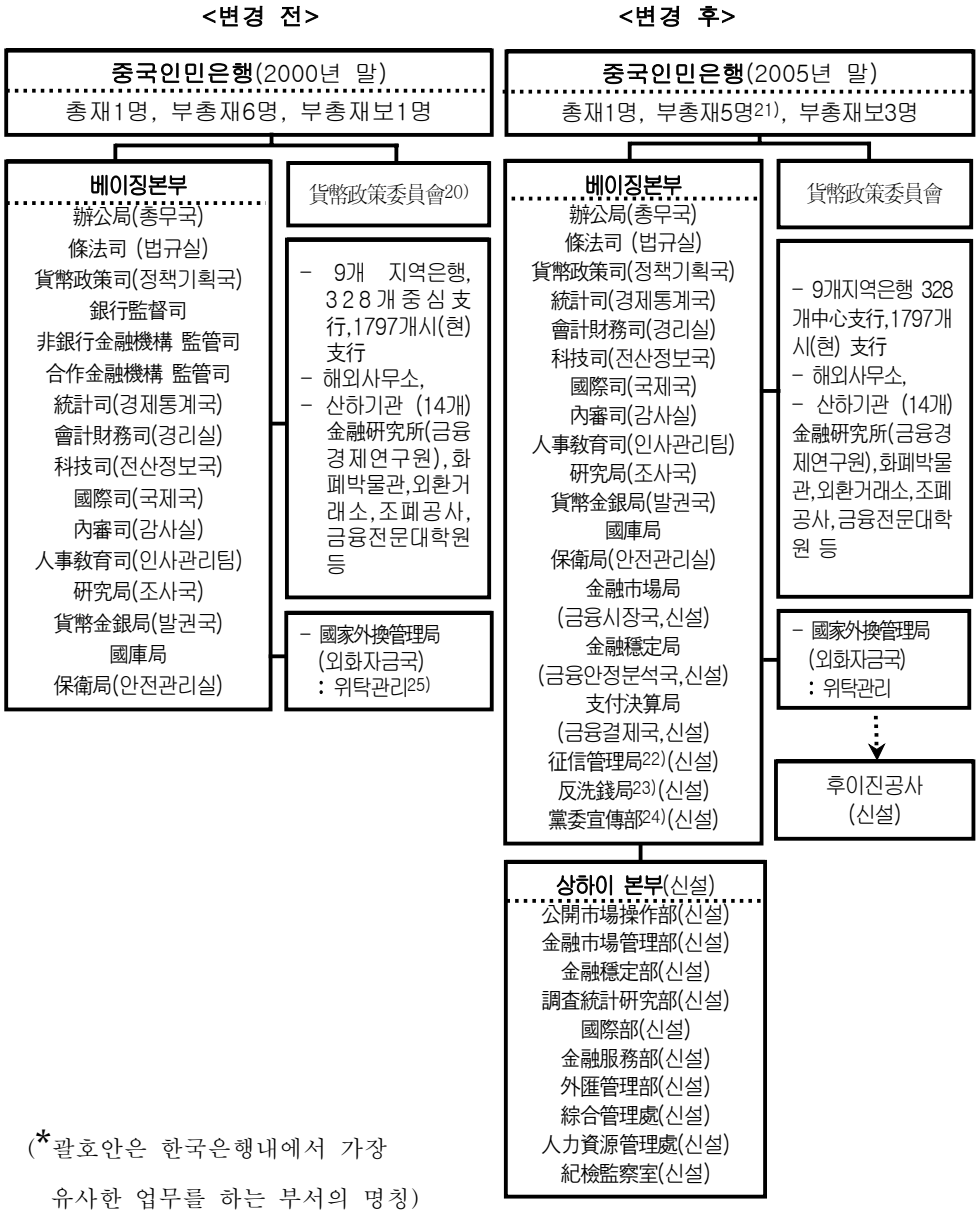

(*괄호안은 한국은행내에서 가장 유사한 업무를 하는 부서의 명칭)

20) 통화정책위원회(貨幣政策委員會)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제 V 장 참조.

21) 부총재 5명 중 1명인 샹준보 부총재가 상하이 본부를 관할한다. 그러나 상하이에 상주하지는 않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를 오가며 근무하고 있다. 샹준보 부총재의 공식직책은 '중국인민은행 부총재 겸 상하이 본부장(中國人民銀行 副行長 兼 上海總行主任)'이다.

5. 통화·금융정책상의 변화

통화정책 수단을 크게 금리, 환율 등 가격형 수단과 통화공급량, 대출총액 등과 같은 총량형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국인민은행은 부득이하게 총량형 수단, 그중에서도 특히 통화량(특히 M2) 위주의 통화정책 수단을 써왔다(孫銘(2004)). 중국인민은행법은 통화정책 수단으로서 금리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율 등의 수단을 열거(제23조)하고 있으나 주식 유동성 문제 등으로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금리도 자유화되어 있지 않아 금리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선진자본국들과 같은 통화·금융정책을 실시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자산은 전체 국민의 자산인데 주식의 형태로 돈 많은 특정 개인이나 외국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체제에 관한 사상논쟁을 벌인 끝에 1991년 주식시장이 개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에 대한 제한이 있다. 결국, 금융 및 자본시장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들어 부분적인 금리자유화와 환율결정 메커니즘 변경을 통하여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다양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부분적 금리자유화: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변동폭의 상한 폐지)

중국인민은행은 2004년 10월 29일 처음으로 상업은행의 대출금리 변동폭의 상한을 폐지하고 하한은 각 은행에 상당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부분적 금리자유화를 단행하였다. 상업은행권의 각종 업무제한이 철폐될 예정인

---

22) 中國人民銀行 征信管理局: 일반은행들의 신용업무 및 대출업무기준 제정 및 관리, 신용대출 관련 규정안 수립, 경제교육 및 금융교육업무 담당.

23) 中國人民銀行 反洗錢局: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 자금세탁관련 국제협력업무, 외환 거래 동향관련 조사업무, 사법부와 협력 하에 자금세탁관련 범죄 공동조사.

24) 中國人民銀行 黨委 宣傳部: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은행 당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당의 사상공작과 선전업무 담당. 정치사상고취와 윤리교육 (精神文明) 강화.

25) 국가외환관리국은 국무원 산하 기관이나 중국인민은행이 위탁관리를 받고 있다.

2006년 말을 전후하여 금리자유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은행 금리의 자유화가 실현되면 소비자금융업무와 기업금융업무 분야에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율의 변동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中國時報(2005년)).

(환율결정 메커니즘 변경)

중국은 1996년부터 대미 달러당 환율을 8.28위안으로 고정하고 일일 변동폭은 전일 대비 ±0.15% 범위 내로 제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약 10년간 환율을 의도적으로 고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꾀하고 동시에 무역흑자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표5 > **중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억달러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E	2006E
GDP 증가율	9.7	8.8	7.8	7.1	8.0	7.3	8.0	9.1	9.5	9.9	8.5
소비자물가 상승률	6.1	0.8	-2.6	-3	0.4	0.7	-0.8	1.2	3.9	2.3	2.5
FDI증가율	12.5	6.6	0.9	-11.4	0.7	15.2	12.4	1.5	13.3	-1.5	-2.0
수출증가율	1.5	21.0	0.3	6.3	27.8	6.8	22.3	34.6	35.4	28.4	15.0
수입증가율	5.1	2.6	-1.5	18.3	35.8	8.2	21.2	39.8	36.0	17.6	17.0

자료: 중국인민은행; 중국통계국; 『한경 비즈니스 대전망 2006』 등

중국의 무역흑자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의 소위 “중국 때리기(China-bashing)”가 본격화되었다. 일본의 “디플레이션 수출의 주범(2002년 통상백서),” 미국의 “2005년 말 기준 약 2,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측의 대중국 무역 적자 및 실업문제” 및 “환율조작국” 등 다양한 근거를 들어 각국은 중국에 대하여 위안화의 환율 조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에 중국 당국은 2005년 7월 2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환율을 8.28에서 8.11로 2.0% 조정함과 동시에 하루 중 환율변동폭을

±0.3%로 설정하였으며 앞으로 금융 및 경제상황을 보아가면서 동 변동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앞으로는 위안화의 가치를 미 달러화에 고정하지 않고 중국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한 복수의 통화를 고려하여 환율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6. 금융감독기능의 분리

가. 은행감독기능 분리

아시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중앙은행이 중앙은행기능과 금융감독기능을 함께 갖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대두함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50여 년간 수행해온 은행감독업무를 2003년 4월 28일자로 설립된 은행감독위원회로 이관하였다(中華工商時報(2005)).

그 결과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 감독기능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중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은 보험업, 증권업과 은행업 등 금융산업별로 감독기관을 두는 체계로 개편되었다. 이 같은 중국의 금융분업화는 미국의 글래스 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을 참고한 것이다. 중국이 이 같이 금융감독제도를 개편한 가장 큰 이유는 잦은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업종별로 전문화된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하였다.[26]

나.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 관련 감독기능은 유지

은행감독과 관련된 업무의 상당부분이 은행감독위원회로 분리되었음에도 통화정책집행과 금융시장안정에 필요한 감독권은 중국인민은행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표6>참조).

---

26) 참고로 미국은 1933년 글래스 스티걸 법(Glass Steagall Act)을 제정하여 금융업종간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다가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9년 금융산업 현대화법(the Gramm-Leach-Bliley Act)을 도입한 바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금융산업 통합화를 추진하였거나 추진과정중에 있다.

<표6>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업 감독과 관련한 업무변화

은행감독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국인민은행 보유 주요업무
- 은행감독관련 규정 제정 - 은행설립 인.허가, 업무영역 허가 - 은행 현장감독 및 지도 - 은행 간부직 업무적성테스트(fit-and-proper test) - 은행관련 통계 집계 - 은행업무 관련 각종 건의안을 국무원에 제시	- 은행간 대출업무, 은행간 채권거래업무, 외환 거래 업무 및 황금시장 관련업무 감독 및 규정제정 - 금융위험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 자금세탁방지 업무 - 경제분석 및 금융통계 업무 - 신용정보, 금융정보 분석업무 - 국무원이 지시하는 기타업무

자료: 중국인민은행 및 은행감독위원회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기관은 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보험감독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은행감독업무를 은행감독위에 이양하고 난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감독업무의 공백에 대비하여 중앙은행이 감독을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답을 주어야 한다라고 중국인민은행법 제 33조에 명확하게 규정해 두었다. 또한 금융 업무를 은행, 증권, 보험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하다 보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05년말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 관리감독 조례(金融控股公司監管條例)”안을 준비중인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분리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체 사이의 방화벽을 명확히 하고, 내부자거래를 방지하며,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자산이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葉定民(2005)).

다음 <표7> 은 WTO 가입 직후 중국인민은행의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많은 변화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표7> WTO 가입을 전후한 중국인민은행의 변화

가입 이전 (2000년 말 기준)	구분	가입 이후 (2005년 말 기준)
공산당 금융공작위원회를 통한 직접적인 명령형 간섭	**중국공산당의 간섭과 지배**	- 공산당 금융공작위원회 폐지 - 중요 사안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간접적 간섭
공산당 금융공작위원회의 강제성 명령형 지시방식의 의사결정	**의사결정방법**	- 중요사안은 중앙은행→국무원 →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 기타 사안은 사후보고
-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 화폐가치의 안정유지와 경제성장 촉진	**중앙은행의 목적과 고유 업무**	- 통화정책의 수립 및 집행 - 화폐가치의 안정유지와 경제성장 촉진 - 금융위험부담 방지 및 해소 - 금융안정수호
중앙은행의 개입은 거의 없었음	**부실금융기관 구조조정**	후이진공사를 통하여 외환보유고를 직접 투입하는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 개입
금융기관의 인가, 관리, 감독기능	**금융기관 설립인허가 업무 등**	(폐지)
-	**금융안정 금융정보분석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신설)
-	**상하이 제 2본부**	(신설)
고정환율	**환율제도**	바스켓 변동환율
- 고정금리 - 국제금리동향과 무관	**금리제도**	- 대출금리 상한선 폐지 - 국제금리동향과 연관성 커짐
외부인사 거의 없었음	**인사개혁1**	총재1인, 부총재2인을 외부 영입
- 1 총재, 6 부총재, 1 부총재보 - 인원수: 17만명 - 직업안정성에 대해 철밥통 인식	**인사개혁2**	- 1 총재, 5 부총재, 3 부총재보 - 인원수: 약 13만 5천명 - 절대적 직업안정에 대한 고정관념 사라짐

V. 예상되는 중국인민은행의 변화방향 전망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2006년 12월로 예정된 금융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중국인민은행은 조직과 기능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WTO 가입 이후에는 은행감독기능 분리·이관 등과 같은 외적인 변화 이외에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변화, 즉 인사개혁, 금융안정기능 강화, 의사결정방식 변경, 공산당의 직접간섭 축소 등을 포함한 조직과 기능 측면에서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체제의 한계라는 제약을 안고 있는 중국은 외부적으로는 주요 무역 상대국들로부터 시장경제국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통화금융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위험 축소를 위한 금융개혁 등을 도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중국은 중국인민은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추가적인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1.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

중국의 중앙은행은 설립 초기에는 재무부(財政部) 산하 정부기관이었으나 점차 중앙은행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1993년11월14일자 공산당 문건을 통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받았다(Guo(2002)). 중국인민은행은 이때부터 재무부로부터 독립되어 국무원 산하 장관급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중국인민은행법에는 재무부로부터의 독립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음에도 주룽지(朱鎔基) 총리가 중국인민은행 총재직을 겸임할 당시(1993.7~1995.6)에 재무부의 국채물량 인수요청을 거부(1994년)한 이래 중국인민은행은 재무부로부터 암묵적인 독립을 인정받아 왔다.

1995년에 제정된 중국인민은행법에 따르면 독립된 회계장부 작성요건(제41조)을 두어 중앙은행에 독립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제2조)는 규정과 중앙은행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에서 보존하도록 한다(제39조)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통화정책과 당국의 지시에 따른 준재정활동의 분리를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반영한다(박찬일(2003)).

중국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재무부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의 독립이며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중국인민은행은 공산당과 국무원의 지도(領導)와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인민은행법에는 중앙은행으로서 해야 할 고유한 업무 이외에 "국무원이 정한 기타의 업무(제4조)"를 하도록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이 지시할 경우 여하한 자의적인 명령도 이행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중앙은행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이와 같이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대하여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하여 무한정의 재량권을 주는 법률제정은 무효라는 원칙[27]을 적용하여 위헌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웨이쟈닝(魏加寧) 등 일부 학자들은 플라자합의 이후의 일본사례를 제시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환율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등의 압력으로부터 중국정부가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히 중앙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일본이 중앙은행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플라자합의(1985년) 이후 엔화의 대폭 평가절상(1985년 260엔/달러 → 1995년 80엔/달러)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치의 시행은 공산당이라는 절대권력 통치하의 중국 현실에 비추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다소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7) void for vagueness, overbreadth, and unfettered discretion doctrine.

먼저 중앙은행 총재나 일반 상업은행의 은행장을 중국어로는 모두 행장이라고 부르는 기존의 관행에서 총재와 행장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차별화[28]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위상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4대 국유은행들을 주식회사로 전환해 법인화 하였듯이 중국인민은행을 독립법인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법 제2조에 한국은행을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두었고 일본은행법 제6조에 일본은행을 법인으로 한다고 명시해 둔 바와 같이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을 정부조직에서 독립법인화 함으로써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독립 채산제를 보다 명확히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인화가 쉽지 않다면 미 연준처럼 연방기관과 민간기업의 결합체, 즉 반관반민 기구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미 연준은 연방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기구이지만 12개 지역 연준은행은 회원은행들의 자본참여를 통해 설립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공적기능과 민간은행의 사적영역이 교묘하게 결합된 구조를 갖고 있다(김재홍(2004)).

셋째, 행정부인 국무원의 산하조직인 중국인민은행을 독립시켜 입법부 산하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입법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입법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화되며 중앙은행의 고유업무와 관련하여 행정부에서도 쉽게 간섭을 할 수 없게 되어 중국인민은행의 독립성과 투명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참고로 미연준은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놓여있어 심지어 대통령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중앙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을 받고 있다.

2. 투명성 제고

현재 중국 내에서도 중국의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다(王子恢(2003)). 이 점에서 누가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좀 더 투명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투명도를 높이

28) 참고로 같은 중국어권임에도, 대만에서는 중앙은행의 총재와 일반 상업은행의 행장을 구분하여 각각 "總裁"와 "行長"으로 호칭하고 있다.

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인민은행법에 의하면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총리의 추천을 받아 국회(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폐회기간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국가주석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제10조) 다음과 같은 미비한 점이 있다.

첫째, 총재의 임기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

둘째, 총리가 총재를 추천할 때 총재의 자격요건[29]에 대한 언급이 없다.

셋째, 총재가 언제라도 임명권자인 국가주석에 의해 해고될 수 있어 정치적 영향력에 좌우되고 설령 통화정책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입장표명이 곤란한 경우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가장 빈틈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며 일부 서구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다.[30]

투명성이 부족하고 법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데다 외부의 간섭마저 심한 조직은 결국 사람중심의 지배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인민은행 총재의 임기보장과 임면과정을 공개하고 입법부로부터 최종 동의를 받도록 중국인민은행법에 명문화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3.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중요한 경제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고위층이 정부 및 정치권과 교감을 갖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금융에 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조직(공산당)과 일반행정기관(국무원)이 중앙은행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전문성을 지닌 인

29)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공산당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30) 예를 들어 Business Week 지(2005.12.12일자) "Banking on Reform in China"이란 기사에는 중국인민은행 총재에 대해서 'one of the shrewdest political movers'라고 표현.

사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의사결정 절차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스템이 아니어서 환율이나 금리 등 통화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 공산당 최고위층의 의중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림3> 환율제도 변경 등과 같은 중요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1. 중국인민은행은 주요사안에 대한 안건을 국무원에 제출

↓

2. 국무원에서 관련담당자들이 국내외 경제동향 및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한 후, 학계 인사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國務院研發中心)의 연구진들에게 건의안 제출 요청 및 국무원 회의용으로 안건준비

↓

3. 국무원 상임위원회(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에서 국내외경제동향 및 안건 검토

↓

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25인 회의를 통해 안건 토론 및 일부 수정

↓

5.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常務委員會, 9인)에서 최종결정

↓

6. 국무원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실시안 작성

↓

7. 중국인민은행은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 세부실시안 실시

자료: 臺灣日本綜合研究所,"日方判斷人民幣升值取決於溫家寶" 등 각종 언론 보도 종합

의사결정의 초기단계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금융에 대해 해박한 전문가집단에 속해있는 반면 의사결정의 마지막 단계에 참여하는 인물일수록 금융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거시경제문제와 정치적 결정에 근거하여 최종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중국인민은행의 총재는 <그림3> 의 4단계와 5단계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정식회의 참석이 아닌 참관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참석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나 중앙은행 총재가 상위층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이 회의의 최종단계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주석은 정치문제에 더 관심을 두고 총리는 금리나 환율의 문제보다는 농촌실업문제나 빈부격차 문제 등 좀 더 거시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고위층의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하급기관에 명령이행을 지시하는 과정(<그림3>의 6단계와 7단계)에서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 특정계층만 이익을 보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05.7.21일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를 평가절상 하기로 한 정부의 공식발표를 하기 직전에 사전정보 누설로 인하여 약 228억달러의 환투기가 일어난 바 있다(여시동(2005)).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행정부의 간섭이 전혀 없거나 최소화된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금융 및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선진국들은 입법부가 청문회나 감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중앙은행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부가 중앙은행관련 분야는 물론 여타 분야에서 법을 잘못 제정하여 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부가 개입하여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호 견제 및 심판의 기능을 제도화하고 있다. 선진국들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고 중앙은행은 행정부 산하 기관이며 사법부는 입법부 산하 기관이다. 따라서 사법부가 위헌법률 심사 권한[31]을 갖지 못하는 등 적절한 상호 견제기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3>에서와 같이 중앙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후에 입법부에서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성이 현저히 부족하고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사결정과정에서 ① 입법부 등의 견제가 거의 없고 ② 비전문가에 의해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③ 법적으로는 정당(공산당)과 행정

31) 참고로 중국에서는 위헌법률심사권한이 사법부에 있지 않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즉 입법부에 있다.

부(국무원)가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에 여하한 자의적인 명령이라도 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④ 중앙은행이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아울러 집단의사결정의 특성상 ⑤ 무의식적이라 할지라도 하위직급은 상위직급에서 의사결정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⑥상위직급은 하위직급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집단의사결정의 문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은 특히, 중국의 중앙은행은 집단의사결정의 문제와 더불어 전문성 부족, 법률제도 및 정치사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4. 통화정책위원회의 기능 강화

중국에도 일견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나 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유사해 보이는 중국인민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貨幣政策委員會 이하 통화정책위원회)가 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중국인민은행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조절, 통화정책 제정 및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동법 제12조)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담당하는 업무는 통화정책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즉, 통화정책위원회는 금리나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자문에 답신하는 역할만 할 뿐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자문에 응하기만 한다는 의미는 힘이 거의 없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 언론들[32]은 중국의 통화정책위원회를 '잡담만 하는 기관(talk shop)'이라고까지 묘사하였다.

Lardy(1999)는 통화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 상업은행업계 대표가 포함된 것에 대해 '상업은행의 이익과 중앙은행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통화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정책 결정에 있지 않다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판단된다.

32) 예를 들어 Far Eastern Economic Review(2001.5.24) 등 참고.

<표8> 금융통화위원회, 中 통화정책위원회 및 美공개시장위원회 비교

	금융통화위원회(한국)	통화정책위원회 (貨幣政策委員會, 중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미국)
구성	7인 중앙은행 총재1인 및 부총재1인(당연직) 5인의 상임위원 (재경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감위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13인** **중앙은행 총재1인(당연직),** **중앙은행부총재 겸 외환관리국장 1인(당연직),증권감독위원회원장 1인(당연직), 중앙은행 부총재, 국무원 대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무부 차관, 통계국장, 수출입은행 행장, 은행 감독위 위원장 , 보험감독위 위원장, 은행업계 대표, 학계 대표 각 1 인**	12인 7명의 연준이사회 이사(당연직) 뉴욕연준은행 총재(당연직) 나머지 11개 지역 연준은행을 4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각 지역연준은행 총재가 1년씩 교대로 봉직
역할	- 한국은행의 통화신용 정책관련 의사결정 -위원의 임기는 4년(한국은행 부총재는 3년)	**- 실질적인 의사결정권 없이 총재와 부총재의 자문 역할** **- 은행업계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나머지는 정해진 임기 없음**	3가지 통화정책수단 중 연준 이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재할인율과 지급준비율 이외의 공개시장조작에 관한 의사결정

자료: 한국은행, 중국인민은행, 미 연준

통화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분기마다 한 번씩 열리도록 되어있는 회의에 위원들의 잦은 결석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위원회에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는 한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WTO 가입 이후 중앙은행의 내부변화가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점차 통화정책위원회의 통화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여 그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볼 때 중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중국사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으나 WTO 가입 이후의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 변화의 방향은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통화정책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국회(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금융동향과 정책시행에 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조치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바람직한 방향은 통화정책위원회가 단순히 자문에 응하는 역할만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도록 하며 중앙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최종결정을 하고 입법부에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은 중국인민은행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치개혁을 통하여 공산당이 중앙은행 고유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산당의 영도라는 문구가 중국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산당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중국의 현실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부인 국무원으로부터 중앙은행의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 및 통화정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의 중국인민은행법 개정은 실현가능성이 다소나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VI. 맺음말

그동안 중국인민은행의 조직, 기능, 의사결정 방식 및 인원수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중국정부는 중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아직도 낙후되어있는 금융부문을 개혁해야 하는 내부적 요인과 WTO 가입에 따라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중앙은행의 개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WTO 가입에 따라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탄력적인 환율정책 채택 및 금융개혁을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의 조직변화, 전문인력 영입, 위상 및 기능강화 등의 추가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을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중앙은행과 비교해 볼 때 통화정책위원회, 중앙은행 독립성, 투명성, 의사결정 방식 등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인 발전추세와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중앙은행의 책임을 강화하고 전문화를 도모하는 등 점차 선진국형 중앙은행에 가까운 방향으로 추가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중국인민은행과 미연준의 역할과 기능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 등의 환율자유화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사회과학원 등 싱크탱크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많은 체제전환국의 구조조정에서 금융분야의 구조조정은 자본의 적절한 수급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고도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의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중국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처럼 사회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예측하는 견해(Chang(2001); Wolf(2003))가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중앙은행 개혁은 그만큼 민감한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

구소련 통치하의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를 주창하던 정권이 권력을

상실하면서 급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했다. 반면 중국은 공산당의 지배력을 포기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 WTO 가입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와 민간경제부문 확대 등의 경제체제변화에 따라 당명(黨名)을 공산당에서 사민당(社民黨)으로 바꾸는 정치개혁방안을 검토하고 공산당의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나 공산당 이외에 진정한 의미의 정당 출현을 허용할 계획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중국은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을 단행하려 하므로 개혁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금융구조조정의 가장 핵심이라 할 만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도 그러한 체제상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중국은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제고 및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와 공산당 우위 및 기존체제유지의 필요성 사이에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을 인정해주려 하면서도 정책당국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분명히 하려는 등의 양면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하려 해도 당 서열 등을 근거로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장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에서 중앙은행 자체의 구조조정과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구조조정은 매우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이전에 외환보유액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對中)압력도 WTO 체제 내에서 시장경제국으로 이행 여부를 비롯하여 무역, 통화, 금융, 지적재산권 등의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위안화의 등락을 비롯한 금융위험과 금융구조조정과정에 따른 시스템상의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중국인민은행의 움직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 국내외 논문 및 저서**

강효백, 『중국법 통론』,pp.48-49, 경희대학교, 2005.

김 욱, 『중국금융구조조정 현황 및 평가』, pp.19-20,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논문, 2003.

김재홍, 『미국중앙은행 금리결정의 비밀』,pp.180-218, 휘즈프레스,2004.

김희락, "중국의 금융개혁과 국내은행의 과제," 대구은행, http://www.daegubank.co.kr/dbfri/pdf/20011112-04.pdf, 2001. 11.

박정동, 『중국과 북한의 비교-개발경제론』 p.206,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박찬일,『중국금융제도의 발전』p.182, 한국금융연구원, 2003.

산업은행 조사부, 『중국의 개혁전략과 성과-부문별 추진과정과 전망』, pp. 220-240, 2001.

여시동, "中 13개市 90분새 228억달러 환투기"조선일보, 2005.10.6.

이동욱, 『영어증권금융용어사전』, 신원문화사,2000.

한경비즈니스, 『대전망 2006』, 2005.

한국은행, www.bok.or.kr.

한국은행 기획국,『주요국 중앙은행의 조직과 기능』, 2004.

한대원, 『현대 중국법 개론』, 박영사,2002.

孔祥毅: 『中央銀行通論』, 中國金融出版社, 2004.

郭 茹, "央行上海總部定位：貨幣政策操作平台," 第一經濟日報, 2005.8.11.

臺灣日本綜合研究所,"日方判斷人民幣升值取決於溫家寶,"
http://www.japanresearch.org.tw/hotnews-1903.asp .2004.12.30.

呂 平, 『中國政制手冊』, 商務印刷館, 1987.

北京黨建, "中共中央關于完善金融系統党的領導体制, 加强和改進金融系統党的工作有關問題的通知," http://www.bjdj.gov.cn/zzfg/dnfg/dnfg4-3.shtm.1998.5.19.

商務週刊, "中國金融高層'走馬換將'的台前幕后," http://business.sohu.com/18

/21/article206302118.shtml.2003. 12. 7.

“央行班子調整完成周小川搭建學者官員班底,” 《世界商業評論》, 2004.8.24.

孫 銘, “金融大變局的華麗前奏：銀監會掀起盖頭來,“ 21世紀經濟報道, 2003. 3.12.

_____, “誰妨碍了貨幣政策傳導? 周小川要清除四大問題,” 21世紀經濟報道, 2004. 4. 19.

葉定民, “人行草擬條例將爲金控公司正名,” 工商時報, http://news.chinatimes.com/Chinatimes/newslist/newslist-content/0,3546,120505+122005122800443,00.html.2005.12.28.

王晨波, 銀行改革成“流水席”政府注資如何“解套,” 中國新聞週刊, http://yndt.bank.cnfol.com/050511/137,1410,1267366,00.shtml, 2005. 5. 11.

王 燦, 政府机构待變, 《財經》, http://gb2.chinabroadcast.cn/1908/2003-3-6/99@175199.htm. 2003.

王子恢, “金融監管体制改革：入世后繞不開的難題-訪國務院發展研究中心宏觀經濟部研究員魏加宁博士,”《世界商業評論》 http://capital.icxo.com/htmlnews/2003/04/23/2026.htm.2003.

中國共産黨中央委員會, “中共中央批轉《中央組織部、中央直屬机關党委、中央國家机關党委關于加强和改進中央党政机關党的工作的意見》的通知”1988.2.13, http://www.bjdj.gov.cn/zzfg/dnfg/dnfg4-2.shtm).

中國對外經濟貿易合作部,『中國加入世界貿易組織法律文件』,法律出版社,2002.

中國時報, 人行: 利率管制基本上已取消, http://money.chinatimes.com/news/china/m94c1702.htm?source=rss.2005. 12.17.

中國人民銀行, www.pbc.gov.cn.

中國人民銀行, 『金融年鑑 机构名录篇』 http://www.pbc.gov.cn/detail.asp?col=1837&id=181&keyword. 2003.

中國人民銀行,『年報』각 년도.

中國人民銀行 『中國貨幣政策執行報告書』,2005.

中華工商時報,“中央金融工作會議召開在即 銀監會懸念懸多久,” 2003. 1. 13.

中國人民銀行, 許文新, “中國金融改革の当面の課題” http://www.fbc.keio.ac.jp/~kaneko/JSME/01s115-kyo.pdf#search='ä¸-å ½%20ä¸-å¤®éŠ€è Œ%20æ”¹é□©.

胡海岩, “中央滙金公司 金融版圖揭秘,” 《中國企業家》, http://www.zgjrw.com/News/200577/Main/240826523700.vaafffffffffhtml.2005.7.7.

Financial Times, “理解中國未來金融穩定的關鍵,” FT中文网, http://review.icxo.com/htmlnews/2005/12/22/743343.htm.,2005.

Ahn, Dukgeun, "Linkages between International Financial and Trade Institutions: IMF, World Bank, and WTO," http://www.kdischool.ac.kr/download/Faculty_resume/w00-03.pdf. 2003.

Bank of China(Hong Kong), "Is Deflation Made in China?", http://www.tdctrade.com/econforum/boc/boc021001.htm., 200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http://www.federal-reserve.gov.

Business Week, "Banking on Reform in China," Dec.12, 2005.

Chang, Gordon, *The Coming Collapse of China*, New York Random House pp.122-143, 2001.

Cheng, Xiaonong, "Written Testimony for U.S.-China Commission Public Hearing on China's Budget Issues" - Dec. 7th, 2001.

Chung, Connie Wee-Wee & Tongzon, Josse L., "A Paradigm Shift for China's Central Banking System," Journal of Post-Keynesian Economics, Vol.7, No.1, 87, Fall, 2004.

The Economist, "Banking in China: Strings Attached," May 6, 2003.

The Economist, "China and the World Economy: From T-shirts to T-bonds," July 28th, 2005.

Far Eastern Economic Review, "Why China Needs A Real Central Bank," May 24, 2001.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Challenge and Promise: Economist

Ping Xie Chosen to Lead Central Huijin Investment Company," The Region, June 2005, http://minneapolisfed.org/pubs/region/05-06/Xie.cfm.

Fernald, John G. and Babson, Oliver D., "Why Has China Survived the Asian Crisis So Well? What Risks Remain?,"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System, International Finance Division Papers Number 633, Feb. 1999.

Gastil, John, "Common Problems in Small Group Decison-Making," http://www.fao.org/sd/ppdirect/ppan0009.htm,May, 1997.

Garvy, George, *Money, Financial Flows, and Credit in the Soviet Union,* p.21,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1977.

Guo, Yong, *Banking Reforms and Monetary Policy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p.58. Palgrave,2002.

Heilmann, Sebastian, "Regulatory Innovation by Leninist Means:Communist Party Supervision in China's Financial Industry," China Analysis No.38, http://www.chinapolitik.de/studien/china_analysis/no_38.pdf. 2004

Kuroda, Haruhiko, "Time for a Switch to Global Reflation," The Financial Times, Dec.1st, 2002.

Lardy, Nicholas, *China's Unfinished Economic Revolution*, pp.172~176, Brooking Institution Press(Washington D.C.), 1998.

Lee, Dongwook. "Learning from China's Experience for the Reform of North Korean Central Banking," Australian Journal of Asian Law, vol. 6, No.3, pp. 253-282, 2004.

_____, "China's Changing Banking Market," Harvard Asia Pacific Review, http://hcs.harvard.edu/~hapr/summer05_envi/8.1-P33-38.pdf., 2005,

Nathan, J. ; Smith, Steven; Hong, Zhaohui, Ed., *Dilemmas of Reform in Jiang Zemin's China.* 2001.

People's Daily, "Theory of China Exporting Deflation Not Conforms to Fact," Dec. 27, 2002.

People's Daily, "Debunking the China Threat Myth," Jan. 20. 2003.

People's Daily,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Will Article 15 Cost Us Another 15 Years?," June 28, 2004.

Roach, Stephen, "The Factor of China", Morgan Stanley.2001.

Wolf, Charles, Jr. et. al, *Fault Lines in China's Economic Terrain,* Rand Corporation,2003.

*** 법률, 조례 및 기타 법규**

중국인민은행법(1995년판), http://www.pbc.gov.cn/detail.asp?col=310&ID=537

중국인민은행법(2003년 개정판), http://www.pbc.gov.cn/detail.asp?col=310&ID=20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조례, http://www.pbc.gov.cn/huobizhengce/huobizhengceweiyuanhui/huobizhengceweiyuanhuitiaoli.asp

중국상업은행법(1995년판)http://www.pbc.gov.cn/detail.asp?col=310&ID=533

중국상업은행법(2003년개정판)http://www.pbc.gov.cn/detail.asp?col=310&ID=16

<부록1> 중국인민은행법 (1995년 3월 18일 의결)*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중국인민은행의 지위 및 그 직무권한을 확립하여, 국가통화정책의 올바른 수립 및 집행을 확보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거시조절체계를 구축·완성하고 금융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를 받아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금융업을 감독·관리한다.

제3조 통화정책은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라 통화정책을 수립·집행
2. 런민비의 발행 및 유통관리
3.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을 허가하고, 감독·관리
4. 규정에 따라 금융시장을 감독·관리
5. 금융감독 및 업무에 관한 명령 및 규정 제정
6. 국가보유 외환, 금의 관리 및 운용
7. 국고관리
8. 지급결제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
9. 금융업에 관한 통계 작성, 조사, 분석 및 예측
10. 중앙은행으로서 국제금융활동에 참여
11.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직무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금융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매년 화폐공급량, 금리, 환율 및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주요 사항에 관한 결정을 국무원에 보고,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전항 이외의 통화정책 관련사항을 결정·집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 및 금융감독상황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하에 법에 따라 독립하여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그 소유로 한다.

*한중국제법률연구소(http://www.lawyer21.co.kr/lawchina/lawyer/6-9.htm)에 있는 번역문을 기초로 하여 중국인민은행 웹사이트에 있는 중국어 원문(http://www.pbc.gov.cn/detail.asp?col=310&ID=537)과 대조하여 필자가 수정함.

제2장 조직

제9조 중국인민은행에 총재 1명과 부총재 약간 명을 둔다. 총재는 국무원 총리의 제청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중에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임면(任免)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부총재는 국무원 총리가 임면한다.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총재 책임제로 한다. 총재는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를 통괄하고, 부총재는 총재를 보좌한다.

제11조 중국인민은행에 통화정책위원회를 둔다. 통화정책위원회의 직무, 구성 및 업무절차는 국무원이 정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중국인민은행은 직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그 파출 기구로서 분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며, 분점 및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이 전적으로 지도·관리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분점 및 지점은 중국인민은행의 수권에 따라 관할지역의 금융 업무를 감독·관리하고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 중국인민은행의 총재, 부총재 및 기타 직원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 금융기관, 기업, 재단법인에 겸직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 총재, 부총재 및 기타 직원은 법에 따라 국가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그 감독·관리를 받는 금융기관 및 관계 당사자에 대해서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3장 런민비

제1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화폐는 런민비이다. 어떠한 조직 및 개인도 중화인민 공화국 내의 모든 공사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급된 런민비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 런민비의 단위는 元으로 하며, 보조단위는 角, 分으로 한다.

제17조 런민비는 중국인민은행이 인쇄, 주조, 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이 새로운 런민비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시기, 액면가, 도안, 견양 및 규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런민비의 위조 및 변조, 위변조 런민비의 매매, 위변조 런민비의 운반·보 유·사용 및 런민비의 고의적인 훼손, 견본·출판물·기타 상품에 런민비의 불법적인 도안 사용을 금지한다.

제19조 어떠한 단체 및 개인도 런민비를 대체하는 증권을 인쇄, 발매하거나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

제20조 훼손 또는 오손된 런민비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따라 교환하고, 중국인민은행은 이를 회수, 폐기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중국인민은행은 런민비 발행금고를 설치하며, 분점 및 지점에 분

지고(分支庫)를 설치한다. 분지고는 상급 고(上級 庫)의 명령에 따라 런민비발행기금을 조달, 방출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업무

제22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통화정책수단을 쓸 수 있다.

1. 규정된 비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지급준비금의 예치요구
2.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3. 중국인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재할인
4.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
5. 공개시장에서 국채, 기타 정부채권 및 외화의 매매
6.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통화정책수단 중국인민은행은 전단에 나열한 통화정책수단을 사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23조 중국인민은행은 법령에 따라 국고를 관리한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재무부문을 대리하여 각 금융기관, 단체에 국채, 기타 정부채권을 발행, 상환할 수 있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은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금융 기관의 계좌에 대해 대월할 수 없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 상호 간의 결제체제를 조직하거나 그 조직을 지원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상호 간의 결제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정한다.

제27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 집행의 필요에 따라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액, 기간, 이율 및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출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중국인민은행은 정부재정에 대하여 대월할 수 없으며, 국채 기타 정부증권을 직접 인수, 판매할 수 없다.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은 지방정부, 각급 정부기관 또는 비은행금융기관,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무원이 특정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중국인민은행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국인민은행은 어떠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없다.

제5장 금융감독

제30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금융기관 및 그 업무를 감독함으로써 금융업의 합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

제31조 중국인민은행은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설립, 변경, 해산 및 그 업무범위를 심사하여 허가한다.

제32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예금, 대출, 결산, 대손처리 등에 대해 수시로 회계감사 및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낮추는 행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갖는다.

제33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해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재무·회계보고서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는다.

제34조 중국인민은행은 전국금융통계자료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이를 공표할 책임이 있다.

제35조 중국인민은행은 국가정책을 수행하는 국유은행의 금융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36조 중국인민은행은 건전한 자체 회계감사 및 검사제도를 수립하고 내부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7조 중국인민은행은 재무예산관리제도를 독립적으로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예산은 국무원 재무부문의 심의를 거쳐 중앙예산에 포함하며, 국무원 재정 부문의 감독을 받는다.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당해연도 지출을 차감하고 국무원 재무부문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총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을 전액 중앙재정에 납입한다. 중국인민은행의 결손은 중앙재정의 자금지원을 받아 이를 보전한다.

제39조 중국인민은행의 수지와 회계업무는 법령과 통일된 국가 재무회계제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국무원의 회계감사기관과 재무부문의 회계감사 및 감독을 받는다.

제40조 중국인민은행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관련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41조 런민비의 위조, 위조 런민비의 판매, 위조 런민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런민비를 변조, 변조 런민비의 판매, 변조 런민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반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 5천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위조 또는 변조된 런민비를 매입하거나 위·변조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보유, 사용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 5천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 광고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런민비 도안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 사용한 런민비 도안을 파기하는 한편,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5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 런민비에 대체하는 증권의 인쇄, 판매, 유통에 대하여는 중국인민은행이 위법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20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금융감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할 때에는 중국인민은행은 위법행위 정지명령을 내리고, 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제46조 행정처벌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7조 중국인민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처벌한다.

1. 이 법 제29조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출을 하는 경우
2.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담보제공하는 행위
3. 발행기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전단에서 열거한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당 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8조 지방정부, 각급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이 중국인민은행 및 그 직원에게 제29조의 규정에 위반된 대출, 담보제공을 강요할 때에는 직접 책임이 있는 당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에 따라 행정처분하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일부 또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49조 중국인민은행의 직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제50조 중국인민은행 직원의 횡령, 수뢰, 부정, 직권남용, 직무태만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한다.

제8장 부칙

제51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록 2> 중국인민은행법(2003년 12월 2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중국인민은행의 지위를 확립하고 그 직책을 명확히 하며 국가통화정책의 정확한 제정과 집행을 보장하고 중앙은행 거시조정시스템의 건립과 정비, 금융안정의 수호를 위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인민은행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중앙은행이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로 통화정책을 제정 및 집행하며 금융위험부담을 방지, 없애고 금융안정을 수호한다.

제3조 통화정책의 목표는 화폐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다음 직책을 수행한다.

1. 그 직책과 관련되는 명령과 규정의 공표와 집행
2. 법에 의한 통화정책의 제정과 집행
3. 런민비의 발행, 런민비의 유통 관리
4. 은행간 대출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5. 외화관리 실시, 은행간 외화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
6. 금시장에 대한 감독관리
7. 국가 외화보유액(금 비축분 포함)의 보유, 관리, 운영
8. 국고 경영관리
9. 지급, 청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행 유지
10. 금융업의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지도와 관리, 자금세탁 방지 자금에 대한 감독과 검사
11. 금융업의 통계, 조사, 분석과 예측
12. 국가 중앙은행으로서 관련 국제금융활동에 종사
13. 국무원 규정의 기타 직책: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본법 제4장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금융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의 연간 화폐공급량, 금리, 환율과 국무원규정의 기타 사항에 대한 결정은 국무원에 보고, 허가를 받은 후 집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전관 규정 외의 기타 관련 통화정책 사항에 대한 결정은 결정 이후 바로 실행에 들어가고 아울러 국무원에 보고한다.

제6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화폐 관련 정책상황과 금융운행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지도로 법에 의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집행, 직책을 수행하고 업무를 전개하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와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중국 한국상회(www.korcham-china.net)의 웹사이트에 게재되어있는 번역문을 기초로 중국인민은행 (http://www.pbc.gov.cn)웹사이트에 있는 중국어 원문과 대조하여 필자가 수정함.

제8조 중국인민은행의 자본전액은 국가가 출자한 것으로서 국가소유에 속한다.

제9조 국무원은 금융감독관리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장 조직기구

제10조 중국인민은행은 총재 1명, 부총재 약간 명을 둔다.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국무원총리의 추천을 받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결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에서 결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임면한다. 중국인민은행 부총재는 국무원총리가 임면한다.

제11조 중국인민은행은 총재책임제를 시행한다. 총재는 중국인민은행의 업무를 지도하며 부총재는 총재의 업무를 돕는다.

제12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를 설립한다. 통화정책위원회의 직책, 구성과 업무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마땅히 국가의 거시조정, 통화정책의 제정과 조정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13조 중국인민은행은 직책 수행상의 필요에 근거하여 분행(分行), 지사를 설립한다. 분행과 지행(支行)은 중국인민은행의 파견기관이다. 중국인민은행은 분행, 지사에 대한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분행, 지사는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받은 권한(수권)에 근거하여 당 관할 구역 내에서 금융안전을 수호하고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중국인민은행 총재, 부총재 및 기타 업무요원은 마땅히 직책을 다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무에 태만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금융기구, 기업, 기금회의 직무를 겸직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중국인민은행 총재, 부총재 및 기타의 업무요원은 마땅히 법에 의해 국가비밀을 유지하고 아울러 직책수행과 관련한 금융기구 및 당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3장 런민비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화폐는 런민비이다. 런민비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모든 공공과 개인의 채무를 지급하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수령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7조 런민비의 단위는 위안(元)이며 런민비의 보조 화폐단위는 角, 分이다.

제18조 런민비는 중국인민은행이 통일 인쇄, 제작, 발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신판 런민비 발행시 마땅히 발행시간, 액면가, 도안, 양식, 규격을 공표해야 한다.

제19조 런민비의 위조, 변조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런민비의 판매, 구매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런민비의 운수, 소지, 사용을 금지한다. 런민비의 고의적인 훼손을 금지한다. 선전물, 출판물 또는 기타 상품에 런민비 도안의 불법 사용을 금지한다.

제20조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런민비 대용 표권(票券)을 인쇄, 제작, 판매하여 런민비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다.

제21조 파손 및 오손된 런민비는 중국인민은행의 규정에 의해 교환하고 아울러 중국인민은행이 회수, 폐기한다.

제23조 중국인민은행은 런민비 발행庫를 설립하고 분행, 지점기구에 分支庫를 설립한다. 分支庫는 런민비발행적립금 조달 시, 마땅히 상급의 조달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규정을 위반하고 발행적립금을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업무

제23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하기 통화정책 수단을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업금융기구에 규정 비율에 의한 예금 준비금의 납부를 요구한다.
2. 중앙은행의 기준이율을 확정한다.
3. 중국인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은행업 금융기구에 재할인을 제공한다.
4. 상업은행에 대출을 제공한다.
5. 공개시장에서 국채, 기타 정부채권과 금융채권 및 외화를 매매한다.
6. 국무원규정의 기타 통화정책수단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전관 열거의 통화정책 수단 운용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제24조 중국인민은행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국고를 경영관리한다.

제25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재무부문을 대리하여 각 금융기관에 국채와 기타 정부채권을 발행, 지불할 수 있다.

제26조 중국인민은행은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금융기관에 계좌 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당좌 대월할 수는 없다.

제27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은행업금융기관 상호 간의 청산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구축을 협조하고, 은행업금융기관 상호 간의 청산사항을 협조하고 청산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다.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과의 회동을 통해 지급 결산규칙을 제정한다.

제28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집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액, 기한, 이율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으나 대출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중국인민은행은 정부재정에 대해 당좌대월 할 수 없으며 국채와 기타 정부채권을 직접 구입하거나 대리 판매할 수 없다.

제30조 중국인민은행은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에 대출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대출금

을 제공할 수 없다. 단, 국무원이 특정 비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어떠한 단체나 개인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장 금융감독관리

제31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의해 금융시장의 운행상황을 감독 검사하고 금융시장에 대해 거시조정을 하며 금융사장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제32조 중국인민은행은 금융기관 및 기타의 단체와 개인의 하기 행위에 대한 검사 감독을 할 권리를 가진다.

1. 예금준비금 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2. 중국인민은행의 특종 대출금과 관련되는 행위
3. 런민비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4. 은행간 대출시장, 은행간 채권시장관리 규정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5. 외화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6. 황금관리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7. 중국인민은행을 대리하여 국고를 경영관리하는 행위
8. 청산관리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9. 돈세탁 방지 규정의 집행과 관련되는 행위

전관 지칭의 중국인민은행의 특종대출금이란 국무원이 결정한, 중국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발행한 특종 목적에 사용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제33조 중국인민은행은 통화정책집행과 금융안정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의 실시를 제안할 수 있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마땅히 제안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답을 주어야 한다.

제34조 은행업금융기관에 지급난이 발생하여 금융위험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의 수호를 위하여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은행업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실시 권한을 가진다.

제35조 중국인민은행은 직책수행의 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업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산부채표,이윤표 및 기타의 재무회계, 통계표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 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기관과 감독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36조 중국인민은행은 전국 금융통계 데이터, 도표에 대한 통일 제작을 책임지며 아울러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제37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당 시스템에 대한 조사, 검사제도를 건립하고 내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6장 재무회계

제38조 중국인민은행은 독립적인 재무예산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중국인민은행의 예산은 국무원 재무부문의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중앙예산에 편성되며 국무원 재무부문의 예산집행감독을 받는다.

제39조 중국인민은행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에서 당해 연도지출을 공제하고 아울러 국무원재무부문이 규정한 비율에 근거하여 총 준비금을 확정한 후의 순이윤을 전부 중앙재정에 상납한다. 중국인민은행의 결손은 중앙재정에서 보충한다.

제40조 중국인민은행의 재정수지와 회계사무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통일적인 재무, 회계제도를 집행하며 국무원 회계심사기관과 재무부문의 법에 의한 회계심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매 회계연도가 끝난 3개월 내에 자산부채표, 손익표와 관련 재부 회계도표를 만들고 아울러 연도보고를 작성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해 공표해야 한다. 중국인민은행의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제7장 법률책임

제42조 런민비를 위조, 변조하고 위조, 변조한 런민비를 판매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런민비인지 뻔히 알면서도 운수 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공안기관은 15일 이하의 구류,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런민비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위조, 변조한 런민비인지 뻔히 알면서도 소지,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공안기관은 15일 이하의 구류,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4조 선전물, 출판물 또는 기타의 상품에 불법으로 런민비도안을 사용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불법 사용한 런민비를 소각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아울러 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45조 대용표권을 인쇄, 제작, 판매하고 런민비를 대체하여 시장에서 유통한 경우, 중국인민은행은 마땅히 불법행위의 정지를 명하며 아울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46조 본법 제32조에 열거된 행위가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중국인민은행이 상황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동시에 불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불법 소득이 50만 원에 미달이면, 50만 원이상 2백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사, 고급 관리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서는 경고처분하며 5만 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7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 중국인민은행에 하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본 법 제30조 제1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금을 제공한 경우
2. 단체와 개인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3. 사사로이 발행적립금을 유용한 경우

전관 행위가 발견되어 손실을 조성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은 마땅히 일부 또는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지방정부, 각급 정부부문, 사회단체와 개인이 중국인민은행과 그 업무요원에게 본 법 제30조 규정을 위반하고 대출금 또는 담보의 제공을 강요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요원과 기타의 직접적인 책임인에 대해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손실을 조성한 경우, 마땅히 일부 또는 전부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50조 중국인민은행의 업무요원이 횡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태만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8장 부칙

제52조 본법에서 지칭하는 은행업금융기관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도시 신용금고(도시신용합작사), 농촌신용금고(농촌신용합작사) 등 대중의 예금을 흡수하는 금융기관 및 정책성 은행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설립된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투자회사, 재무회사, 금융임대회사 및 국무원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타의 금융기관은 본 법의 은행업 금융기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3조 본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